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3042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30424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2. 9 선고 2018가단2375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조합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1. 8. 11.

판결선고 2021. 9. 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2. 9. 선고 2018가단2375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안동시 E 대 579㎡, F 대 711㎡, G 대 579㎡에 관하여, 피고와 H 사이에 2018.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H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4. 10. 접수 제11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준범, 판사 장래아, 판사 김지영